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11.2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3년 11월 28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교통지도과장 이윤우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에 근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규정 정비 및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(1) 세입근거 항목을 추가함(안 제3조).

- 「주차장법」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

(2) 특별회계 세출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제2항).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
- 일반회계로의 전출 (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상수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,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중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재정운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▶ 안 제3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'이행강제금의 징수금'을 추가하고
 - ▶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'일반회계로 전출' 또는 '통합관리기금에 예탁'할 수 있도록 하였음. 단, '일반회계로의 전출'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음.
-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바,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,
 - ▶ 세입에 '이행강제금의 징수금'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사항이며,
 - ▶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'일반회계로의 전출'과 '통합관리기금에 예탁' 조항 신설은,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고 복지 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 재정이 매우 어렵고,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 외 5개 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, 비교적 여유가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질의회신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과 질의회신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,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,
-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구 재정운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,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원 중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 제22조와 제32조에 의해 주차장의 설치·관리 및 운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입과 세출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